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26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전세임대 운영·관리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전세임대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특화형 전세임대’ 추진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취약계층 우선공급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실효성 없는 일반 유형 1순위 규정에서 삭제하여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 및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7조)
- 나. 종전의 다자녀 유형 규정은 전세임대 신청가능 지역을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업대상지역에 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7조

의5조, 제10조의4)

- 다. 다자녀 유형 1순위에 ‘한부모가족’을 포함시켜 지원대상의 외연을 확장함(안 제7조의5)
- 라. 실질적으로 주거상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함(안 제12조)
- 마. 특화형 전세임대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입주자선정 방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팩 스 : 044-201-55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전화 044-201-4479, 4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